

2차저작물로 '출판영토' 넓혀 나간다

아직은 구상단계라 구체적 성과물은 적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매니지먼트 요구돼

출판계가 2차저작물이라는 '신대륙'을 향해 닳을 올렸다. 아직 초기단계지만 출판계가 염두에 두고 있는 2차저작물은 드라마나 영화같은 영상물. 콘텐츠 빈곤에 시달리는 우리 영상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승산이 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앞으로 출판계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2차저작물에 대한 출판사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작가와 협상해야 하고, 편집자의 역할을 프러듀서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

최근 기존의 출판물을 다른 문화상품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2차 저작물에 관심을 기울이는 출판사가 늘어나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출판계가 염두에 두고 있는 2차 저작물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물. 특히 문학출판의 경우, 시나리오가 태부족한 우리 영화계 현실을 감안할 때 한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나 출판계가 넘어야 할 산은 많고 높기만 하다. 출판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 출판계의 경험이 너무 일천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2차저작물에 대한 출판사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작가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저작권법은 작가에게 유리해

그동안 장정일씨의 《아담이 눈뜰 때》 《내게 거짓말을 해봐》, 구효서씨의 《낮선 여름》 등의 작품을 비롯해 최근 전해성씨의 《마요네즈》, 김영하씨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전경린씨의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등의 작품들이 영화화되거나 드라마화됐다. 하지만 이들 작품들이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출판사가 일정한 지분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2차 저작물에서 생긴 이익의 대부분은 관례적으로 작가의 몫이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역시 전무하다. 출판

계의 관례에 비춰볼 때 2차 저작권에 대한 계약은 출판사와 저자간의 암묵적인 합의 하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의 대표적인 몇몇 출판사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A출판사의 출판계약서를 살펴보면 '저작물(작가의 원저작물)이 번역, 번안, 만화, 연극, 영화, 방송, 녹음, 녹화 등에 이차적으로 사용될 경우 갑(저작권자)은 을(출판권자)에게 위임하고 을은 구체적 조건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B출판사의 출판권 설정 계약서에는 '(원저작물)이 이차적으로 사용될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작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작가들의 주장은 출판사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신인작가나 무명 작가에게 출판사의 계약 조건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설가 최인석씨는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작가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출판사에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2차 저작물을 파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소설가 장정일씨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지금까지 그가 출간한 소설은 대부분 영화화됐다. 하지만 장씨에 따르면 영화화된 그의 소설의 경우,

계약은 영화사와 장씨 사이에서 직접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출판사가 한 일은 거의 없었다. 장정일씨는 "2차 저작물을 위한 매니지먼트 팀을 따로 구성해 영화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출판사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기울인 출판사는 보지 못했다"며 출판사의 지분요구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출판사들도 작가들의 주장에 대부분 수긍하고 있다. 민음사 장은수 편집장은 "출판사에는 출판권 이외의 권리는 없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말해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문학동네 정홍수 편집장 역시 "작품을 기획할 때부터 2차 저작물을 고려해 편집하고,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를 위해 출판사가 체계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했다면 충분히 출판사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 없이 작품에 대한 2차 저작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이 작가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사실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41조 2항에는 출판권 설정 계약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혀 있다. 이는 2차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불황에 허덕이는 출판계가 2차 저작물이라는 '신대륙'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2차 저작권을 둘러싼 작가와 출판사의 물밑 경쟁 또한 치열하다. 사진은 지난 9월 5일 한국출판연구소가 개최한 <개정 저작권법 및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설명회>.



맺지 않은 경우, 그 권리는 창작자 또는 작가에게 있다는 뜻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김현철 책임연구원은 "2차 저작권이 작가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2차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특별히 계약하지 않았다면 작가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각철 교수(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는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갈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2차 저작물 파생을 위한 적극적 매니지먼트 필요해

그동안 출판사가 2차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최근까지 영화화되거나 드라마화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작가가 영화사나 방송국을 상대로 직접 계약했다. 그 과정에서 출판사의 역할은 양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정도였을 뿐이다. 따라서 출판사는 지분을 요구할 만한 '명분'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몇몇 출판사들이 2차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 대표적인 출판사가 황금가지로 현재 판타지 소설《옥스타칼리스의 아이들》의 영화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소설의 경우, 황금가지가 영화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진행사항을 직접 챙기고 있다. 정기적으로 작업진척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작가의 판권료를 높이기 위해 영화사와 줄다리기도 벌였다. 황금가지 측에서 작가를 대신해 판권문제와 세금문제 등 세세한 일처리까지 대행했다. 황금가지는 작가와 2차 저작권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으며 2차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황금가지는 이미 이영도의 판타지 소설《드래곤 라자》로 '예행연습'을 했다.《드래곤 라자》는 현재 주간 만화잡지《코믹펜티》에 만화로 '변인'돼 연재중이다.《드래곤 라자》의 만화에 대한 저작권은 금강기획이 가지고 있는데, 이씨와 금강기획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것은 황금가지다. 그리고 모 게임제작업체와 컴퓨터

게임에 대한 계약도 체결했다. 이씨는 상대방의 저작권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황금가지가 중개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황금가지측은 만화와 게임에 대한 지분을 이씨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노력봉사'한 셈이다. 황금가지 장은수 편집장은 이에 대해 "수업료를 치른 셈"이라고 말한다.

문학과지성사 역시 적극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 문학과지성사는 작가와 영화사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편지와 팩스를 통해 영화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문학과지성사측은 "영화화에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를 작가와 합의해 작성할 예정이며 기여도에 따라 작가에게 일정 부분의 매니지먼트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2차 저작물을 파생시키기 위한 출판사의 매니지먼트는 더욱 체계화되고 전문화될 전망이다. 작가 역시 내심 출판사의 적극적인 매니지먼트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출판사가 나서서 영화사 또는 방송국과 협의할 경우 작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저작권에 대한 출판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편집자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은수 편집장은 "이제는 편집자의 업무 자체가 변화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편집자는 출판물을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판매·관리하는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학과지성사의 고동균씨 역시 이에 동감한다. 그는 "기존의 편집자 역할에 프로듀서의 역할이 추가돼야 한다. 앞으로 매니지먼트와 프로듀싱이 편집자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고씨는 "질 높은 1차 저작물을 많이 발굴해 그 토대를 튼튼히 한다면 2차 저작물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과 같이 그 토대가 잘 다져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잭팟부터 신경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와 출판사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저자와 출판사가 서로의 인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최갑수 기자